



# 평화 목적의 원자력 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원자력법 개선 방안

이 경희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머리말

원자력법이 개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 첫째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이다. 즉 원자력 안전에 국제 규범화의 진전에 따라 원자력의 안전 조치에 관련한 국제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국제적 요인이며, 또 상당한 기술 수준에 와 있는 국내 원자력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행정 체계, 특히 규제 체계의 독립성과 효율성의 제고 요구가 그 국내적 요인이다.

둘째는 극도로 다양화하고 기술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자력법이 법리적으로 볼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측면이다.

원자력법도 국내법 체계의 한 부분인 이상, 법령의 체계나 법령의 세부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요청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전자는 주로 원자력 안전 규제 체제의 정립이라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후자는 주로 원자력법의 체계화라는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는 원자력법이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벗어날 수 없음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요구에 부응하기에 충분한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우선 원자력 이용과 원자력 안전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요구의 긴장 관계가 원자력법령 속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 나라 원자력법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원자력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원자력법의 변천

### 1. 원자력법의 제·개정 연혁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11일 제정 이후 1982년의 전문 개정을 포함하여 17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법 제정 1958.3.11 법률 제483호
- 제1차 일부개정 1961.10.2 법률 제735호
- 제2차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37호
- 제3차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5호
- 제4차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3호
- 제5차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8호
- 제6차 일부개정 1969.1.24 법률 제2093호
- 제7차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4호

- 제8차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602호
- 제9차 전문개정 1982.4.1 법률 제3549호
- 제10차 일부개정 1986.5.12 법률 제3850호
- 제11차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 제12차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40호
- 제13차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3호
- 제14차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 제15차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0호
- 제16차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54호
- 제17차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2호

## 2. 원자력법의 발전 단계

원자력법의 발전 단계를 원자력 이용의 진흥과 안전 규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구분을 시도해 보았다.

### 가. 제1단계(1958~1969)

원자력법의 제정 이래 1969년 제6차 개정 이전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이 시기는 거의 순수하게 원자력의 진흥에 관한 규정만 있던 시기이다. 이는 최초 원자력법의 목적에서 잘 나타난다. “본 법은 원자력의 연

구 · 개발 · 생산 ·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을 통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최종 목적은 국민 생활의 향상과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초 원자력법은 전부 9장 33개 조의 비교적 단출한 법이다. 원자력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원자력원을 두고, 원자력원에 원자력 위원회, 사무총국, 원자력연구소를 두었다.

원자력위원회는 1.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 기획과 시책, 2. 관계 행정 기관의 원자력의 연구 · 개발과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계 행정 기관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경비의 배분 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 기관에 종사할 연구원과 기술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의 개발 기관과 생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사항, 6. 원자력 이용에 관한 연구소 · 시험소 · 대학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 할 수 있는데(제6조), 대체로 원자력 진흥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모두 5차의 개정이

있었는데 제1차 개정(1961.10.2)은 국가재건회의 행정 기구 개편 방침에 의한 것으로 원자력 정책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제3차 개정(1963.12.13)에서 원자력원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고, 제5차 개정(1967.3.30)에서는 과학기술처 원자력청으로 기구의 변화가 있었다.

또 제2차 개정(1963.12.16)에서 방사선의학연구소, 제4차 개정(1966.8.3)에서 방사선농학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원자력청 내에 사무국 및 3개 연구소 체제를 형성하였다 시기이다.

### 나. 제2단계(1969~1982)

이 단계는 1969년 1월 24일 제6차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의 도입에 따라 필요한 규제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즉 원자력 이용에 있어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하여 원자력 시설 및 원자력 관계 물질의 취급 사항에 대한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제20조의 2), 원자로의 파괴 등에 대한 범죄를 중형으로 다루게 하였다.

제6차 개정에서 원자력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를 개정하여 “3.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관리와 원자력의 이용에 수반되는 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안전 규제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제7차 개정(1973.1.15)에서는 “4.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이용에 수반하는 장해 방어에 관한 사항, 9. 방사성 강하물의 장해의 방어 대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안전 규제에 관한 직무를 강화하였다.

또 제8차 개정(1973.3.12)에서는 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험 연구용 원자로 또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거주의 제한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여 방사선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였다.

1973년 원자력청 산하의 3개 연구소를 통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신설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법의 입법으로 말미암아 원자력법으로서는 최초로 분법화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 다. 제3단계(1982~1996)

이 시기는 원자력의 이용·개발의 확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계 조항을 보강하기 위하여 제9차 개정(1982.4.1)에 의하여 원자력법을 전문 개정한 시기로부터 시작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시되어 원자력법의 목적도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 이용’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원자력 이용과 안전 관리를 평등하게 규정한 것은 좋았으나, 이용은 학술 진흥과 산업 진흥을 중간 목적으로 하여 국민 생활 향상과 국민 복리 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으나, 다른 한편인 안전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함으로써, 내용보다는 문장 구조상의 어색함이 존재한다. 이 어색함은 법의 실질적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최초의 법에 있었던 인류 사회의 복지 증진은 왜 빠졌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나마 이러한 규제 중시 정책은 제10차 개정(1986.5.12)에 의하여 다소 반동으로 돌아가는 움직임도 있었으며 원자력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1989년에는 안전 규제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설립된 것도 안전 규제를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982년 법은 목적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위원회도 원자력 이용 및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하였지만,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둘으로써 입법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규정은 최초 법이 9장 33개조인데 비하여, 1982년 법은 12장 122개조로 대형화하였지만 결국 전홍법의 테두리 속에 규제법만 잔뜩 집어넣어 법의 성격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원자력 행정 체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은 이 시기가 법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 라. 제4단계(1996~현재)

이 단계는 1996년 제13차 개정(1996.12.30)에서 종전에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이용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던 것을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상징된다.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또 행정 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 의견 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 처분 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 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 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 절차인 청문

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제104조의 3), 규제의 민주화를 기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사업자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5차 개정(1999. 2.8)에서는 규제에 관한 많은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 제16차 개정(2001.1.16)에서는 원자력의 안전 조치와 관련한 국제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생산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 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였고(법 제5조의 3), 동일한 설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공통적인 설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표준 설계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법 제12조의2 신설),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시정·보완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 주기시설의 해체시에도 건설 허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품질 보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였다(법 제23조의3·제31조제2항제6호 및 제55조제2항제6호 신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안전 조치 추가가 의정서에 따라 핵주기 관련 연구개발 활동 및 특정 원자력 관련 품목의 생산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등 국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법 제103조) 원자력법의 국제화에로 나아가게 되었다.

### 3.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자력 이용과 원자력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법의 변천을 위와 같이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 단계에서는 이용이라는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던 법체계가 제2 단계에 이르면 규제의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규제 조항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3 단계에서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조항이 엄청나게 확대됨과 동시에 원자력법 속에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규정과 혼재하며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4 단계에 이르면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분리로 상징되듯이 원자력

안전의 독립성과 투명성과 함께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일견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은 매우 합리적으로 발전을 해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17차에 걸친 원자력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행정 체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원·원자력청·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등으로 그 명칭은 바뀌었으나 초창기 원자력 연구 및 개발을 관주도로 이끌어 오던 체계는 국내외 원자력계의 많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제3 단계에서 원자력 이용과 원자력 안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재정하고 그 업무 역시 별도의 각기 다른 기구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기회에서 통합 규정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법의 분법화와 원자력 안전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또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법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위원회 중심의 심의·의결 체제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2 단계 및 제3 단계에서 원자력 안전 업무가 원자력위원회의 기능 내지는 직무에 포함되기는 하였



으나 원자력위원회는 역시 원자력 이용 중심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제4 단계에 이르러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리·독립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성 및 기능에 있어서 역시 대등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제다가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기능을 과학기술부에서 동시에 관장함으로써 그 공정성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 두 가지 기능의 독점은 원자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과학기술부가 독점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결국 각 시대에 이르러 그 시대가 요구하는 취지에 따른 법의 개정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의 외형에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개정에 의해 기대되었던 결과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

입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합리적인 원자력 행정 체제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원자력 기술은 상당 부분 발전하였지만 그 신뢰성의 구축에는 전혀 성과를 얻지 못하여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공들여 쌓은 연구 실적과 기술을 소용없게 만들기 때문에 결

국 원자력 이용 조차 퇴보할 수밖에 없게 만들며, 원자력 이용 체계를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 원자력법의 기본 이념 정립

##### 가. 평화적 목적의 명시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은 평화의 목적에 한정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최초 원자력법은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과 인류 사회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또 현행 원자력법 역시 그 목적에서 안전 관리를 통한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평화 목적을 그 어디에서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우리 나라 헌법 전문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이용 역시 평화적 이용에 국한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원자력법에도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에도 평화적 이용 조항을 두지 않았음은 물론, 인류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국제 사회에서 쓸데없는 오해

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나. 안전성의 확보

원자력에 기인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원자력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자력 안전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성의 확보는 국가 존립의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무리 고도의 원자력 이용 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더라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도 안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물론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원자력산업이 위축되어 원자력 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역효과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다. 원자력 행정의 공개성·투명성

원자력법의 기본 이념으로서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 이용 시설 등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원자력법의 어디에도 이를 선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력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국내외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안)의 제정 발의가 있었는데,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를 별개의 입법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공개성·투명성이라는 기본 이념을 원자력법 속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면 원자력기본법 속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인데, 원자력법의 체계화라는 국가적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또 별개의 단일법으로 만드는 것은 원자력법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의 주 내용이 한국원자력안전정보센터라는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어서 업무 중복 방지와 비용 효과 측면에서 더욱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2. 원자력법의 체계화

### 가. 분법화

현행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등의 서로 다른 법목적이 단일법 속에 혼재되어 있어서 입법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그 법리도 달라야 하는 여러 원자력 분야가 일률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어서, 법리적 모순은 물론 법에 대한 접근 및

법 집행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이용·개발, 안전 규제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우월적인 일반법적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세부적인 안전 규정들과의 아무런 차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 원리의 통일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원자력법 속에 혼재되어 있는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원자력진흥에 관한 규정, 원자력 시설의 규제에 관한 규정, 특정 핵물질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방사성 동위원소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방사선 방호에 관한 규정 등을 모두 분해하여 개별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상 분법화라 부르고 있으며, 현재 이들을 원자력기본법(총칙, 원자력위원회 및 안전위원회 설치 규정, 원자력진흥규정 등), 원자

력시설 및 핵물질 규제법(원자력시설규제규정, 핵물질규제규정, 특정 핵물질규제규정 등), 방사선방호법(방사선방호규정, 방사성동위원소규제규정 등) 등의 3개 개별법 모델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나. 원자력기본법

원자력법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은 바로 원자력법의 분법화를 통한 체계화 작

업이다.

원자력기본법을 중심으로 개별법들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지침 등이 정비되어야 원자력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원자력이 용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심법인 원자력법을 거의 매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난맥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심법이 조변석개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행정에 신뢰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가장 중요한 원자력법의 분법화로 인한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진흥법, 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 등의 개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원자력재해방지법 역시 재난관리법과 재해대책기본법 등의 정비가 있은 후에 전체 원자력법 정비와의 관련하에서 추진되었으면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해와 관련한 법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인위 재해는 재난관리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재해 관련 법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기관간의 기능의 중복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재난관리법상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대책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유사하고, 재난관리법상의 국가 재난 관리 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방재 기본 계획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안전 규제 체제의 정립

#### 가. 문제점

IAEA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1996) 제8조(규제기관)에 의하면 규제에 필요한 권한·능력·재원과 인력을 갖춘 규제 기관의 설립을 요구하고, 규제 기관의 기능은 원자력 진흥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실질적 분리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기술부가 진흥 기관이면서 동시에 규제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과학기술부 장관의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단 순한 자문 기관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부는 과학 기술 정책을 주도하면서 원자력을 과학 기술의 한 분야로 생각하면서 정책적으로 원자력 기술 개발에 집중 해 왔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 관리

역시 원자력 기술 진흥의 한 분야로 취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의 기본 생리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자력 개발의 초기에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 나라도 원자력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므로 원자력 안전 관리에 그 초점을 두고 그에 합당한 행정 체제와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개선 방향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여타의 행정 체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과 합리성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규제 행정에 있어서 관 주도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섣불리 민간 위주의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과 같이 영향력이 큰 분야에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현재와 같이 원자력 진흥과 원자력 안전 규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서로 상반되는 양날의 독점은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합리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신뢰성 확보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학기술부는 진흥 업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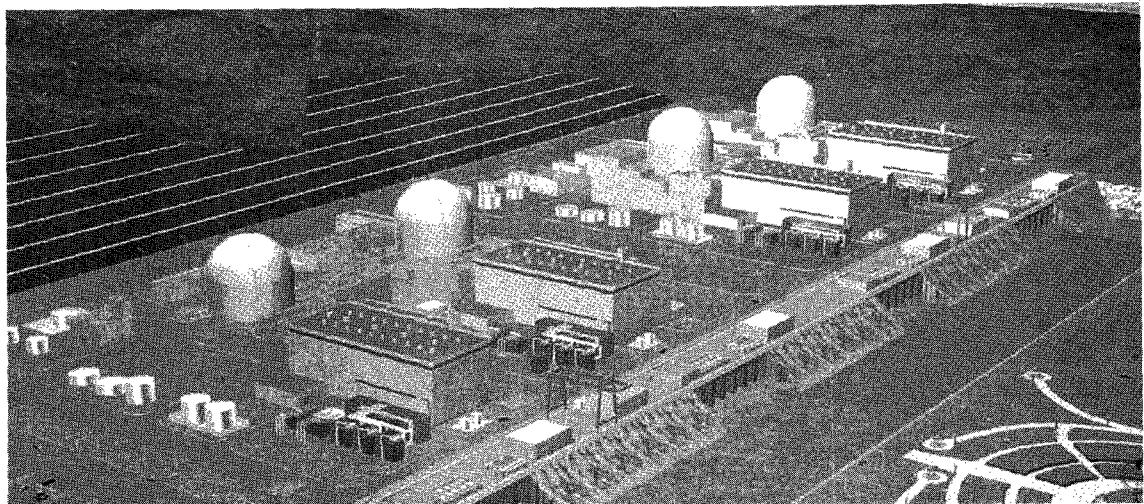
안전 규제 업무 중 택일하여야 할 것이다(과기부 내에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물론 있을 수는 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의 존폐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견으로는 기초 과학 기술과 국가 기반 기술의 축적 이 아직 미흡하고 21세기 국가의 장래를 과학 기술에 걸 수밖에 없는 현재의 우리 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부는 아직도 그 역할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 외국의 조직 개편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부의 존치를 전제로 한다면 원자력에 관한 한 과학기술부는 진흥 부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규제 부처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조심스럽게 또 사견을 제시한다면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진흥을 포함한 과학 기술 진흥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원자력 안전 업무는 어디에서 전담할 것인가? 여기에서도 여러 유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서의 독립 규제 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고 싶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 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위상과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규제



법은 결국 그 시대의 소산이기 때문에 원자력법 역시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자력법의 체계화와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의 정립은 국내외적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원자력 이용의 확대 여부는 물론, 국제적 신뢰를 쌓음으로써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의 제고로 국내외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하기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산업 안전 기능과 통합하여 독립 규제 위원회로서의 산업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대형 사고의 발발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재해 및 재난을 효율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은 국민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 조직을 설치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원자력 재해 및 가스 폭발 등의 재난의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고 공화

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면 충분한 명분이 되리라 생각한다.

### 여론

법은 결국 그 시대의 소산이기 때문에, 원자력법 역시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은 각각의 시대에 이르러 그 시대가 요구하는 취지에 따른 법의 개정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의 외형에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법의 개정에 의해 기대되었던 결과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원자력 행정 체제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고 말았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과거의 오류를 청산하고 평화 이용·민주·자주·공개라는 원자력법의 이상에 따라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법의 체계화와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의 정립은 국내외적 신뢰를 얻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원자력 이용의 확대 여부는 물론, 국제적 신뢰를 쌓음으로써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한 곳에 가칭 「원자력 행정 체제 및 법제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에서 제시된 여러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